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4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9.

박 왕 규 의원

#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왕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실행계획 수립,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8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5083
----------	----------

발의연월일: 2025. 9. 3.

발 의 자: 박왕규 도하석 이선주  
김기열 김정희 황국주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인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명시(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실태조사, 실행계획 수립,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7조)
- 라.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5.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자 정보격차 외에도, 비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 이용과 접근에 있어 발생

하는 격차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현황 및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
2.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3.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정 및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관계 법령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09. 5. 22., 2010. 5. 11., 2011. 3. 29.,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7. 9. 19., 2020. 6. 9.>

1.~7.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21.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

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5. 3. 27.]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